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21358 |
|----------|-------|

발의연월일 : 2026. 9. 14.

발 의 자 : 김의겸 · 서영교 · 김동아  
이성윤 · 김남희 · 박균택  
김기표 · 박지원 · 김한규  
이해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82조 등).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2조 중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을 “교도소·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으로,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교도소·구치소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11조제4항 중 “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경찰공무원이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이나 교도소”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u>교도소 · 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 · 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u> 게 할 송달은 <u>교도소 · 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u> 한다.                  |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u>교도소 · 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u> -----<br>-----<br>----- <u>교도소 · 구치소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u> ---.                  |
|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 ③ (생략)<br>④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u>경찰 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u> 으로써 집행한다. |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br>④-----<br>-----<br>----- <u>중대 범죄수사청수사관 · 경찰공무원이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이나 교도소</u> -----<br>-----. |
| ⑤ ~ ⑨ (생략)                                                                                                                                  | ⑤ ~ ⑨ (현행과 같음)                                                                                                                             |